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2284
-----------	------

2021년 4월 29일
교 육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4월 1일, 성흠제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3. 상정일자
 - 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1년 4월 29일 상정, 수정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성흠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수강료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

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포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를 포함토록 함(안 제9조제1항제6호 신설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84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는 ‘병역명문가 선양 사업’을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.
- 병역명문가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.
-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전국에서 6,395가문이

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,198가문이 선정되었습니다.

[표-1] 병역명문가 선정현황

구분	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	'15년	'14년	'13년	'12년	'11년~'04년	
가문	전국	6,395	1,017	741	714	492	560	466	497	545	301	1,062
	서울	1,198	187	157	138	82	95	83	100	91	69	196

-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, 서울시는 2015년에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·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.

[표-2]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황

소관위원회	조례안	혜택
교통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주차요금 20% 감면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
- 동 개정조례안 또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예우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

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.

- 아울러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정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, 공공시설의 목적,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바, 동 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.¹⁾
- 그러나 동 조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율을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²⁾ 「지방자치법」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³⁾ 추후 교육규칙에 규정된 수강료 감면율을 동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그리고 교육감은 현재 교육규칙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1)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

2) 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
4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
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

6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3) 제39조(지방의회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[표-3] 수강료 감면 비율

구 분		감면 비율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100%
국가보훈대상자	본인	100%
	유족 및 가족	50%
장애인	장애의 정도가 심함	100%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	50%
만 65세 이상인 자		100%
다문화가족 구성원		50%

※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]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’은 의미가 중복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감면대상자들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6136, 2021.4.13.).
- 이와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르면 “예우대상자”란 “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어,⁴⁾ 예우대상자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규정할 경우 마치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

4)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 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 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분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, 동 규정은 “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”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

○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VII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8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의 “예우대상자”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므로,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규정할 경우 의미가 중복됨.

2. 주요내용

-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을 “예우대상자”로 수정함 (안 제9조제1항제6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6호 중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 을 “예우대상자” 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 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6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</p> <p>7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p> <p>7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의 호 번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 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u>6.</u>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u></p> <p><u>7.</u>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